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00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박성훈 · 김위상 · 고동진
박충권 · 김기현 · 서명옥
추경호 · 한지아 · 김도읍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등).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광고) ① 관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관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관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관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관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관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
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2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광고) ① 관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u> <u>② 관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u> <u>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u> <u>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u> <u>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u>

제29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5. 다른 관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관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관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관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7. (생 략) ④ (생 략)	<u>2의2. 제1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